



EC의 제3국에 대한 Solvency II 동등성 평가

김혜란 연구원

요약

■ 유럽위원회는 2016년 1월 Solvency II 시행에 앞서 제3국의 지급여력 제도와 Solvency II의 규제 동등성 평가를 시행하여 왔음. 규제 동등성 평가항목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그룹감독 그리고 재보험의 총 3가지임. 제3국 동등성 인정은 “완전 동등성”, “잠정 동등성”, “일시적 동등성”으로 구분되며, 2016년 5월 현재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3국은 총 8개국임. 현재 우리나라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서 국내 보험회사가 EU에서 재보험 수재 등 글로벌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변화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유럽위원회(EC)는 2016년 1월 Solvency II 시행에 앞서 제3국(third country)의 지급여력 제도와 Solvency II의 규제 동등성 평가를 시행함.

- 규제 동등성 평가항목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그룹감독 그리고 재보험의 총 3가지임.¹⁾
 - EU (재)보험회사가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3국에서 영업하는 경우 Solvency II 기준 대신 해당 국가의 기준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여 EU에 건전성 보고를 할 수 있음(Solvency II 227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3국의 (재)보험회사가 EU 지역에서 영업하는 경우 EU의 그룹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국가의 그룹감독을 받음(Solvency II 260조).
 -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3국의 재보험회사는 EU 재보험회사와 같은 방법으로 EU 감독기관의 규제 적용을 받게 되어²⁾ 특정 최소 신용등급 및 담보약정 의무가 면제됨(Solvency II 172조).
- 이는 EU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보험회사 사이에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규제차익을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함과 더불어 EU 보험회사의 해외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임.³⁾

1) European Commission(2015, 6, 5), “Insurance: European Commission adopts a first package of third country equivalence decisions under Solvency II”.

2) EU 보험회사가 제3국 재보험회사와 체결한 재보험계약은 EU 재보험회사와 체결한 재보험계약과 같은 효과가 발생됨.

3) MAYER · BROWN(2015, 9), “Solvency II: Equivalence Decisions”.

■ EC의 제3국 동등성 인정은 “완전 동등성(full equivalence)”, “잠정 동등성(provisional equivalence)”, “일시적 동등성(temporary equivalence)”으로 구분됨.

- 제3국이 지급여력비율 산출, 그룹감독, 재보험의 3가지 항목 모두 동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무기한으로 “완전 동등성”을 인정받음.
- 제3국이 완전 동등성 기준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EU와 동등한 지급여력 제도를 도입·적용할 것이라고 예상될 때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있어 10년간 “잠정 동등성”을 인정받음.
 - 잠정 동등성은 처음 10년 인정받은 후 10년 더 갱신할 수 있음.
- 제3국이 그룹감독 또는 재보험 항목에서 5년간 동등성을 인정받은 경우 “일시적 동등성”을 인정받으며, 이 경우 1년 연장 가능함.⁴⁾

■ 2016년 5월 현재 EC의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3국은 총 8개국임.

- 스위스, 버뮤다는 무기한 완전 동등성을 인정받음.
 - 스위스는 2015년 6월 처음으로 완전 동등성을 인정받은 국가임.
 - 버뮤다는 지급여력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잠정 동등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2015년 7월 새로운 보험업법을 채택함으로써 재평가를 통하여 그해 11월 완전 동등성을 인정받음.
-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미국은 지급여력비율 산출에 있어 10년간 잠정 동등성을 인정받음.
 - 미국은 2016년 2월에는 그룹감독 및 재보험과 관련하여 양자 간 협정을 논의하였음.
- 일본은 재보험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일시적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며, 지급여력 산출비율과 관련하여 10년간 잠정 동등성을 인정받음.

■ 현재 우리나라는 동등성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로써 국내 보험회사가 EU에서 재보험 수재 등 글로벌 보험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전략을 수립, 운영할 필요가 있음.

kiri

4) Sidley Austin LLP(2015. 6. 18), “European Commission Adopts First Series of Third Country Equivalence Decisions”.